

#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9-68
----------	------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 필수조례 적기 마련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 이행(안 제2조~제4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7조~제8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 붙임1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3

## 사전예고결과 : 붙임4

- 입법예고 : 2022. 9. 19. ~ 10. 11.(22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붙임5

## 〈 불임 1 〉

#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시장, 본청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안산시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환경정책과
임 안 자	실·과장	환경정책과장
	직위·성명	최미연
	담당·팀장	환경정책팀장
	직위·성명	백대현
담당자	담당자	정무영
	성명·전화	(행정 2613)

#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68
------------	------

제안년월일 : 2022년 12월 1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 □ 수정이유

- 상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따른 20명 이내로 수정함.

## □ 주요골자

-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수를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수정(안 제10조제2항)

##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30명” 을 “20명” 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p>제10조(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3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10조(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원안과 같음)</p> <p>② ----- ----- <u>20명</u> ----- ----- ----- ---.</p> <p>③ ~ ⑤ (원안과 같음)</p>